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대상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7.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 공고기간: 2024. 7. 1. ~ 2024. 7. 15.
- 공고대상

성명	주소	물건지위치	위반면적(㎡)	비고
박*호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 ***동 ****호	당산동*가 ** 외 *필지, ***호	5	폐문부재

- 공고장소: 영등포구청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 02-2670-367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